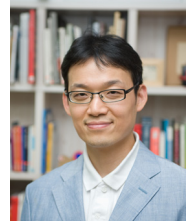


과테말라 국외입양 전개 과정 연구



박 정 준 (중앙대학교)
(writext@naver.com)

국문요약

세계 최대 규모의 국외 입양송출국인 과테말라에서 국외입양은 사회의 고질적 병폐와 착종되어 왔다. 빈곤과 열악한 사회안전망, 확대 가족을 지탱시켜준 공동체 붕괴, 선주민들의 궁핍, 아동 착취 상황은 국외 입양송출의 표면적 원인을 제공했다. 여기에 폭정의 시기 동안 자행된 실종 사건들은 국외 입양송출 실상을 은폐하는데 악용되기도 했다. 외국인 유괴 괴담이 한창이던 1980년대에 실종된 아동 중 상당수는 기실 국외로 입양되었다. 당시 정부와 군에서는 진실을 은폐하며 무고한 희생자를 양산했는데, 일부 과테말라인들은 외국인들과 자국 내 방외인들을 유괴범이나 장기밀매 사범으로 단정했다. 외국인 집단 공격이라는 후폭풍이 벌어진 데는 36년간의 내전 기간에 자행된 제노사이드와 인권 유린으로 피해를진 과테말라인들의 상처가 있었다. 내전이 끝난 이후 불법 입양이 기승을 부리면서 과테말라 아동은 여전한 위기에 처해 있다. 과테말라에서 국외입양의 제도화는 불법 입양이 활개를 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오늘날 과테말라 아동이 처한 인권 침해는 아동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주요 입양송출국인 한국에서 과테말라의 사례를 교훈 삼아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주제어 : 국외입양, “실종”, 불법 입양, 과테말라 실종아동에 관한 진실, 장기 밀매 괴담

I. 문제제기

본고에서는 과테말라의 국외입양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가 국외입양의 문제에서 무관해지기 힘든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검토한다. 국외입양과 연관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추세에 발맞추어, 본고에서는 그간 한국에 거의 소개되어 오지 않던 과테말라 국외입양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본고에서 과테말라의 국외입양 전개 과정에 주목하는 까닭은 불법 입양 및 입양 제도의 정치적 악용, 국외입양 제도화의 역기능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과테말라의 사례가 국외입양의 폐해를 개선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국외입양 담론에서는 원가족¹⁾과 헤어진 아동이 선진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안락하게 살게 된다는 점이 부각된다(Leinaweaver 2013, 104). 최적의 양육 조건을 갖추었지만 불임 등이 원인이 되어서 부모가 되지 못하는 선진국의 입양자(adopter)와, 제3세계의 ‘고아’가 국외입양 제도를 통해 가족이 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상생 방안으로 인식되었다(Choy 2013, 3). 입양수용국(receiving country)에서는 입양된 이후 순조롭게 적응해서 살아가는 입양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입양 성공을 자축하기도 했다(Lindblad et al. 2003; Odenstad et al. 2008, 1804; Verhulst 2000; Von Borczykowski et al. 2006).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국외입양 제도의 부정적 면모가 속속 드러나며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입양국에서 자살(시도)이나 범법 행위, 파양 이후 위탁보호 및 재입양, 수감시설 구금, 사회·경제적 약자가 된 입양아(인) 비율이 비입양아(인)보다 월등히 높게 조사된 것이다(Cederblad et al. 1999, 1329). 국외입양 제도에 드리워진 난맥상을 지적하는 일군의 입양인은 근본적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유럽적 신체’로 서구에서 살아가는 고충을 토로하는 입양인들은 입양된 이후 물질적으로 안락하게 살 수 있었으나, 양부모 대상 감정 노동과 익명화된 공간에서 이민자로 오인되는 삶이 주는 정체성 혼란 및 인종주의 피해, 원가족과의 재회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양부모들과는 차별화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Shin et al. 2006).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입양 제도와 연관되어서 제기되고 있다. 친생부모가 살아있는 아동이 ‘고아’로 둔갑돼서 입양되거나, 입양 기관이나 입양 중개인이 난처한 상황에 처한 원가족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은 채 입양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보고되

1) 본고에서는 입양아(인)의 생물학적 부모를 원가족(birth family)과 친생부모(birth parents)로 부른다. 입양으로 맺어진 부모를 본고에서는 ‘양부모’(adoptive family)라 부르며 입양을 준비 중인 예비 양부모를 ‘입양자’(adopter)로 부른다.

고 있다(Liem 2000; Trenka 2002; Trenka 2009). 하여 ‘고아’ 문제 해결의 첩경으로 부각됐던 국외입양 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려는 시도가 부쩍 활발해지고 있다.

본고에서 증점적으로 살펴볼 과테말라에서는 국외입양의 부작용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 최대 규모로 자국 아동들을 미국 등지로 입양 보낸 과테말라의 상흔은 입양 관련 괴담 형성과 불안의 폭력적 분출로 가시화됐다. 서구의 양부모들이 향유하게 될 가치가 과장되어서 회자된 탓에 국외 입양송출과 관련된 음모이론이 기승을 부렸다 (Briggs 2012; Dubinsky 2010; Fonseca 2006). 당시 유행했던 입양 관련 괴담은 대부분 입양아의 장기 적출이나 유괴와 연관됐는데, 선진국 환자들에게 이식할 건강한 장기를 확보하기 위해 입양 제도가 악용된다는 우려이었다(Fonseca 2006, 158-159). 입양아들이 위협에 처해 있다는 염려는 과테말라에서 국외입양이 초국가적 범죄와 부패, 인권 유린과 관련되어서 인식된다는 점을 보여주며 장기간 지속되었다.

본고에서는 과테말라 국외입양의 전개 과정을 들여다보며 주요 입양송출국이 된 원인을 이해해본다. 과테말라 측에서는 일종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과테말라 정부의 자발적 의지로 국외입양을 활성화시킨 바 있다. 본고는 과테말라 아동 입양과정에서 입양송출국 과테말라와 입양수용국 미국의 ‘상생’이 있었다는 데 착안하여, 헤이그 국가 간 입양협약(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에서 강조한 ‘아동의 최대이익’(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양상을 살펴볼 터이다. 국외입양 제도의 애초 목표와 달리 국민국가 및 양부모, 입양 기관들의 이익이 강조되는 현금의 상황을 과테말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또 다른 주요 입양송출국인 한국에서 국외입양의 폐단을 시정하는 데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는 헤이그 국가 간 입양협약의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준다.

1. 선행연구 검토

오늘날 중남미 국외입양²⁾에 대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인데³⁾ 이러한 연구를 크게 네

-
- 2) 중남미 국외입양의 역사는 다방면으로 전개된다. 과테말라와 콜롬비아, 엘살바도르의 대규모 아동 입양송출로 인한 부작용, 아르헨티나의 불법 입양이 남긴 상흔, 아이티의 급작스러운 국외입양 과정의 난맥상, 1960년과 1962년 사이에 벌어진 쿠바의 피터 팬 작전(Operación Pedro Pan)으로 인해 아동들이 냉전체제 하 미국과 쿠바 간 외교전의 희생양이 된 운명, 괴담 유포가 도화선이 된 브라질의 국외입양 종식 노력 등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 3) 폰세까의 브라질 입양 연구, 브릭스(Laura Briggs)와 더빈스키(Karen Dubinsky)의 중남미 지역 국외입양 연구, 라이프센(Esben Leifsen)의 에콰도르 입양 연구, 라이나위버(Jessica Leinaweaver)의 페루와 스페인 간 입양을 매개로 한 상호작용 연구, 로태비(Karen Smith Rotabi)의 중남미

가지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중남미 지역 사회·정치 문제의 부산물로 나타난 국외입양의 전개 과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Hoelgaard 1998; Leifsen 2008; Rotabi et al. 2012a; Rotabi et al. 2012b; Rotabi et al. 2012c). 여기에서는 법치주의 원칙과 투명성, 체계적 제도로 운영되지 못하는 폐단이 중남미에서 불법 입양을 초래하는 문제를 다룬다. 둘째, 브라질처럼 국외입양 중단 논의가 있었던 입양송출국에서 종식의 어려움을 다룬다(Fonseca 2006). 셋째, 중남미 출신 입양인의 삶을 질적 방법론을 통해 다룬다(Leinaweaver 2013; Yngvesson 2010). 넷째, 중남미 아동의 국외입양을 냉전이나 국제 원조와 같은 외교사 차원에서 다룬다(Briggs 2012; Castañeda 2002; Dubinsky 2010). 위의 연구들은 국외 입양송출을 초래하는 중남미의 고질적 문제처럼 국외입양 과정에 나타난 폐해와 중남미와 입양수용국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연구한다. 브라질 출신인 폰세까(Cláudia Fonseca)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구자가 미국과 노르웨이, 캐나다와 같은 입양수용국 출신이다. 폰세까를 제외한 연구자들의 글에서는 국외입양의 문제점을 시정해가는 중남미 내부의 노력이 자세하게 조명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비교적 활성화된 과테말라 국외입양에 대한 연구는 기간별로 두 시기로 나뉜다. 우선 입양과 관련된 괴담 유포와 아동 실종이 정점에 달한 내전 기간에 발생한 국외입양 연구가 다수 발표돼 있다(Briggs 2012; Castañeda 2002; Dubinsky 2010).⁴⁾ 학정을 일삼던 정권이 내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결과 오래도록 괴담 유포 세력이 밝혀지지 않은 한계가 지적된다. 더불어 과테말라의 국외입양 폐단을

국외입양 원인 분석, 호울고르(Suzanne Hoelgaard)의 콜롬비아 입양 연구, 잉베손(Barbara Yngvesson)의 중남미 출신 스웨덴 입양아 연구, 달렌(Monica Dalen)의 중남미 태생 입양아와 한국 태생 입양아의 학력 비교연구가 발표돼 있다.

4) 브라질뿐만 아니라 쿠바에서도 아동 관련 괴담은 입양 열풍을 초래했다. 더빈스키는 국외입양과 관련하여 전 세계 아동을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한다. 그는 ‘혼종적 아이’와 ‘국가적 아이’, ‘실종 아이’로 아동을 분류한다. 이 가운데 ‘국가적 아이’는 미국에 입양된 쿠바 아동을 일컫는다. 미국의 CIA가 주축이 되어서 실행한 ‘피터팬 작전’으로 말미암아 쿠바를 탈출하게 된 쿠바 아동이 14,000여명에 육박한다(Dubinsky 2010, 6). 입양되기 전 쿠바에서 부모와 살던 아동은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에 입양되며 원가족과 헤어지게 된다. 카스트로가 집권을 시작할 무렵 쿠바에서는 쿠바에 잔류하면 아동이 불행해질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된다. 부모와 격리된 후 강제노역을 해야 한다거나, 소련에 입양되어서 사회주의자로 성장하게 되거나, 심지어 장기매매 피해자가 되어서 살해될지도 모른다는 유언비어가 급속도로 유포되었다(Dubinsky 2010, 25). 1960년에서부터 1962년까지 실시된 <피터팬 작전>은 이름 그대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 소문은 시사주간지 <TIME>에 기사화되며 실제 위협으로 인식됐다(Briggs 2012, 154; Dubinsky 2010, 34). 그러나 당시 쿠바 전역을 휩쓸던 괴담이 허구로 밝혀지면서 이산가족이 된 사람들의 상실감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모든 ‘페드로 팬’이 미국 가정에 입양된 것이 아니어서, 일부 아동은 미국과 근접한 주(住)의 보육시설에서 기거하기도 했다.

다루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Banks 2004; Bhabha 2004; Smolin 2006). 이 연구에서는 과테말라의 불법 입양 실태에 관한 입양수용국의 반발을 다루며, 중남미 최대 수준의 합계출산율과 빈곤, 영아사망률이 불법 행위를 초래하는 문제를 지적한다(Rotabi et al. 2012a).

하지만 과테말라의 국외입양 연구를 미국 연구자들이 주도하면서, 과테말라 내부의 시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과테말라의 국외입양 연구가 백인 양부모나 입양수용국의 시각을 탈피해야 할 시점에서, 본고는 현금의 국외입양 논전에서 주도권을 갖는 서구에서 경시되기 쉬운 문제를 짚어내는 데 의의를 둔다.

II. 과테말라 국외입양 제도의 형성

1. 과테말라 국외 입양송출의 원인

이 절에서는 국외입양을 21세기 이후 본격화한 아프리카나, 동구권 몰락 이후 국외입양을 대폭 증가시킨 러시아 등과 달리, 20세기부터 오늘날까지 국외 입양송출을 지속하는 과테말라 국외입양의 원인을 살펴본다.

첫째, 과테말라에는 입양될 수 있는 아동이 상대적으로 많다(Banks 2004, 38). 과테말라에서는 빈곤이나 열악한 사회복지 및 전통적 확대 가족 개념의 축소⁵⁾ 등으로 원가족이나 지역공동체가 양육하지 못하는 아동이 국외로 입양되는 사례가 많았다. 과테말라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기준 2.83명으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다(The World Factbook 2017). 입양아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원주민의 합계출산율은 6명을 상회한다(Banks 2004, 39; Groza et al. 2009, 650).⁶⁾ 건강한 신생아를 입양 기관에 양도할 시 친생부모는 상당

5) 입양되지 않더라도 확대 가족과 함께 비교적 순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까지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입양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브라질식 입양(adoção à brasileira)은 지역공동체와의 유기적 연결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이다. 보통 친생부모(birth family)만을 부모로 간주하는 서구와 달리, 브라질 빈민가에서는 아동이 다수의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한다. 부모가 빈곤이나 질병으로 고난에 직면했을 때 아이는 일시적으로 타인의 집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이 경우 아이는 친생부모뿐 아니라 위탁보호를 맡아준 이도 ‘엄마’로 간주한다(Fonseca 2002b, 204). 아이는 이후 원가족의 집으로 복귀하기도 하지만, 영구 보호가 아니라 일시적 보호에 그칠 수 있다. 부모가 집 밖에서 유급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빈민가에서는 마을에 남겨진 아동들을 가사노동을 하며 집에 머무는 여성이 공동육아 방식으로 돌봐주곤 했다. 빈민가 아동에게 이 여성 역시 광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Fonseca 2002c, 402).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공동육아 방식이 약화되거나 입양 기관이 빈민가에 침투한 결과, 확대 가족에서 자라나는 아동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금액을 받는다(Rotabi et al. 2012a, 404). 소외 계층이 5년을 꼬박 벌어야 마련할 수 있는 돈을 단번에 마련할 수 있는 제안은 궁핍한 원가족을 유혹한다(Groza et al. 2009, 654). 이러한 실태로 인해 자녀를 입양 기관에 양도하며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또한, 과테말라의 도시화 비율은 2015년 기준 51.6%로 낮은 편이나 이혼향도가 증가하고 있다(World Bank Group 2016). 객지에서 노동하는 여성이 혼외관계에서 임신할 경우 자식을 기르기 어려운 조건도 입양아 발생 원인이 된다(Groza et al. 2009, 652). 지역 공동체에 속한 여성이 혼외관계에서 출산한 아동을 확대 가족의 지원 속에서 양육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주여성들은 이러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

둘째, 국외입양이 장기화되며 입양 관련 인력이 증가한 것이 입양의 상시화로 귀결되고 있다. 계층을 망라해서 국외입양 사업에 관여하는 과테말라인들은 불법 입양을 절차를 준수한 정식 입양으로 위조하는 데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법조인과, 이 작업에 공모하는 의료진, 국내입양보다 국외입양을 우선시하는 입양 기관 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Briggs 2012, 192; Fonseca 2006, 158). 불법 입양 혐의로 지탄을 받는 입양 중개인은 빈곤지역에서 재정난이나 질병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산모들을 찾아 나선다(Rotabi et al. 2012c, 130). 건강한 신생아 공급을 위해 임신부를 전용 시설에 기거시키며 관리하기도 하는 입양 기관에서는 산모가 중도에 입양 의지를 철회할 경우 제공한 비용을 전액 반환하게 한다(Groza et al. 2009, 654; Rotabi et al. 2012b, 115). 이미 사용한 금액을 상환할 수 없는 빈곤한 산모들은 고육지책으로 자식을 입양 보낸다.

미국인들은 과테말라 아동을 입양하며 막대한 입양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한 명의 아동을 입양하며 대략 25,000 미국 달러에서 40,000 달러를 낸다. 입양 수수료 책정 기준과 사용 내역은 외부에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Rotabi et al. 2012c, 131). 일각에서는 입양 수수료 중 상당 금액이 불법 입양 중개인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추정하며 생모를 포함한 원가족이 받는 금액이 미미하다고 추정한다(Garigan 2007, 180). 입양 기관이나 중개인, 입양자가 친생부모에게 금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나 아동 매매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Rotabi et al. 2012a, 130). 산모가 자식을 입양 보내기로 결심하면 불법 입양 조직은 가짜 엄마까지 급조해서 법원으로부터 입양 서류를 발급받는다(Banks 2004, 42). 막대한 이득이 확보되는 입양 산업에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가담하는 것이다

6) 중남미에서는 낙태수술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De Jesus 2013, 3).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했거나, 임신 상태 혹은 출산으로 인해 산모가 위험에 처하더라도, 낙태가 전면적으로 불허된 니카라과나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가 있다(Amnesty International 2009, 7; Amnesty International 2014, 6).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출산했거나 자녀가 많아서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여성이 자식을 입양 보내기도 한다. 한편, 과테말라는 여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낙태법이 매우 강경한 편이 아니다. 과테말라에서는 임신부의 건강이 위협받을 경우 최소 두 명의 의사의 승인 하에 낙태 수술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Brosnan 2011).

(Rotabi et al. 2012c, 131).⁷⁾

셋째, 중남미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와의 공조 속에 국외입양이 추진된다.⁸⁾ 미국 정부와의 외교 관계도 과테말라의 국외입양에 영향을 미친다(Banks 2004, 43). 미국에서는 1973년에서부터 1983년까지 국외입양이 이전보다 두 배가량 증가하는데, 콜롬비아와 페루, 과테말라, 칠레 등 1970년부터 1980년대까지 우파정권이 집권한 국가에서 미국과의 우방 관계가 국외입양에 영향을 미쳤다(Briggs 2012, 161).

넷째, 서구의 미디어에 그려지는 과테말라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가 일부 서구인의 아동 '구출'(rescue) 동기를 자극하기도 한다. 입양과정에서 입양송출국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기 일쑤이다(Hoelgaard 1998, 206). 서구에서 중남미를 연상하면 떠오르는 범죄나 마약 거래, 빈곤, 폭력, 부정부패 이미지는 아동이 온전하게 성장하기 힘들다는 관념을 각인시킨다. 서구에서 중남미 관련 이미지는 아동 입양 이후에도 특이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일부 양부모는 중남미 출신 입양아(인)의 중남미계 갱단 가담 가능성을 걱정하기도 한다(Leinaweaver 2013, 118). 반면 고난에 처한 중남미 아동을 입양함으로써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도 존재한다(Groza et al. 2009, 655).⁹⁾

2. 과테말라 아동 입양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

과테말라 아동이 미국 등지에 대규모로 입양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이해에 덧붙여서, 서구의 양부모들이 아동을 입양하며 얻은 가치를 살펴보는 것은 국외입양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과테말라 및 입양수용국들에서 과테말라 아동 입양 과정에서 얻는 이점을 살펴본다.

우선 아동이 대거 국외로 입양되는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인구 증가로 고민하는 국가에서는 아동을 국외로 입양 보내며 인구 감소 효과를 부분 달성할 수 있다

7) 한국이나 인도에서는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 비율이 국내입양을 추월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Yngvesson 2010, 32). 반면, 전체 입양에서 98%가량을 국외입양이 차지하는 과테말라의 상태는 이례적이다(Groza et al. 2009, 653; Wilson et al. 2005, 743).

8) 중남미에서 콜롬비아와 과테말라, 아이티, 멕시코, 페루, 브라질이 대표적 입양송출국이다(Selman 2016, 3).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가정에 입양된 국외입양아 중 22%가량이 중남미 출신인데(The Bureau of Consular Affairs, U.S. Department of State 2016) 이 수치는 오늘날 한국과 중국, 러시아가 세계 최대 입양송출국으로 남아있지만, 국외입양 건수를 대륙별로 집계했을 때 중남미가 세계 최대 입양송출 대륙임을 확인해준다(Briggs 2012, 11).

9) 과테말라의 입양아 중 선주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상은 인종이나 에스니시티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달라지는 현실과 연관돼 있다(Gibbons 2015, 2). 국내입양이 태부족한 과테말라에서 상당수의 라디노는 마야계 아동 입양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Groza et al. 2009, 655).

(Fonseca 2002a, 200). 1970년대 한국에서는 해외이주 장려와 국외 입양송출이 인구 감소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Kim 2012, 119). 둘째, 국외입양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전문 인력’이 등장하면서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게 된다. 입양송출국에서는 국외입양을 주도하는 법조인과 사회복지사, 번역가, 공증인, 위탁부모를 비롯한 돌봄노동자 등 다수가 입양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영속성을 추구하는 입양 기관들의 활황으로 국외입양 종식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¹⁰⁾ 셋째, 입양자가 아동을 입양하며 지출하는 고액의 입양 수수료는 외화벌이 수단이 되기도 한다(Dubinsky 2010, 108). 여러 입양송출국에서는 입양 시 양부모가 아동의 출생국에 방문해서 직접 인도해갈 것을 요구한다(Dorow 2006; Fonseca 2002b, 32). 양부모가 교통편과 숙박 시설, 식당, 현지 가이드 및 통역가를 이용하며 입양 수수료 이외에도 입양송출국은 외화를 벌게 된다. 넷째, 성인 입양인은 향후 입양송출국과 입양수용국의 관계에서 가교 역할을 할 자산으로 기대를 받는다(Kim 2010, 228). 성인 입양인의 출생국 방문이 보편화되는 시점에서 사후 입양 서비스(post adoption service)는 입양송출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트렌카 2010, 41).

한편, 입양수용국에서는 국외입양 과정에서 확보하는 장점이 많기에 장기간 국외입양에 적극적이다. 첫째, 불임이나 동성애, 독신 등으로 출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외국 아동을 입양함으로써 부모 되기 욕구를 실현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완전한 수준의 시민권(citizenship)을 누리기 위한 선결 조건에 중산층 지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핵가족, 이성애자로서의 성적지향이 포함된다.(Briggs 2012, 139; Howell 2007, 6; Kim 2010, 117). 양부모는 무자녀 커플로서 절감했던 소외감을 입양아를 양육하며 극복하게 된다. 둘째, 인구 감소 및 고령사회와 같은 인구 위기와 불임 커플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입양수용국에서는 국외에서 아동을 입양하며 인구 위기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게 된다

10) 20세기에 대표적 입양송출국이었던 브라질에서는 국외 입양송출을 초래하는 문제로 입양이 증가했는데, 입양아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문이 횡행하자 브라질 여론이 요동쳤다. 빈곤여성 중 일부가 불법 입양 중개인에게 소액을 받은 뒤 신생아를 양도하는 문제가 보도되며, 자국 아동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회를 성토했다는 여론이 확산된다(Fonseca 2002a, 28; Fonseca 2006, 158; Smolin 2006, 168). 브라질 정부는 마침내 국외입양 중단을 천명했지만 입양아 수만 감소했을 뿐 국외입양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에서 국외입양을 종식시키려는 움직임에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 데는 어폐가 있다. 1989년에 2,000여명에 육박하던 국외 입양 송출이 2000년에 이르러 400여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Fonseca 2002a, 29). 브라질의 국외입양 감소는 브라질만의 노력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1990년대 이후 신흥 입양송출국이 국외입양 시장에 대거 진출한 것이 전통적 입양송출국의 입양송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루마니아와 러시아, 중국 등이 자국 아동들을 대거 서구에 입양 보내며 입양될 수 있는 아동 공급이 폭증했다. 이 조건과 결합하여 브라질의 국외 입양송출은 21세기 이후 주춤세가 이어진다(Fonseca 2002b: 32).

(Leinaweaver 2013, 17). 실제 몇몇 입양수용국에서는 이주자 유입과 국외입양이 인구 문제를 푸는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Ruzik 2008, 2). 셋째, 국외입양 과정에서 양부모와 입양수용국은 주도권을 갖게 된다. 양부모의 욕구에 걸맞게 입양아의 연령과 인종, 국적, 젠더를 선택하는 시장원리 속에서 공산품을 선택하듯 양부모들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 조건을 제공받게 된다(Dorow 2006, 20). 일부 양부모는 중남미 아동을 입양한 이후 기대에 흡족하지 않거나, 입양아가 심각한 건강 상태일 경우 파양하기도 한다(Barni et al. 2005, 46~49). 넷째, 국외입양 과정에서 입양송출국과 맺은 관계는 추후 부수적 이익을 창출하므로 향후 경제 발전이나 외교에 부과 혜택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며 과테말라 아동이 국외로 입양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 불법요소가 가미되며 난맥상을 보이는 과테말라의 국외입양 실태를 후술할 절에서 살펴본다.

Ⅲ. 과테말라 국외입양의 전개 과정

1. 괴담의 형성 및 국외입양 전개 과정

본 장에서는 인구비율상 국외 입양송출 비율이 가장 높은 과테말라의 내전 기간 중 실종 아동이 입양아가 된 사정에 주목한다(Banks 2004, 32). 중남미에서는 역사적 파국을 맞이할 때마다 입양이 본격화되는 등 국가적 상흔이 입양으로 귀결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¹¹⁾ 1994년 과테말라에서는 인신매매범들의 아동 유괴 소문이 파다했다. 거듭되는

11) 아르헨티나에서는 군부가 적으로 경멸하던 인사의 자녀를 유괴해서 친군부 인사들에게 입양시키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지속된 ‘더러운 전쟁’(Guerra Sucia) 기간 중 발생한 불법 입양 사태가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아르헨티나에서는 ‘좌파 불순분자’로 매도된 반체제인사의 자녀뿐만 아니라, 체포될 당시 임신 중이었던 여성이 출산한 자녀까지 불법으로 입양시켰다. 500여명으로 추산되는 입양아 중 일부는 칠레를 비롯한 국외로 입양되기도 했다(BBC 2014, Briggs 2012, 171). 아르헨티나 군부정권이 불법 입양에 치중한 원인으로 좌파 단죄 및 소위 ‘불순분자’에게 태어났지만 아이만큼은 ‘정상가족’에서 양육하며 새 삶을 부여해야 한다는 가치가 논의된다(Briggs 2012, 162). 당시 수용시설에 수감된 임신부 중에는 임신상태에서 낳치된 이들뿐 아니라 군인들의 성폭행으로 임신한 후 출산하자마자 살해당한 산모들도 포함돼 있었다.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의제화한 〈5월 광장 어머니회〉(Asociación Madres de Plaza de Mayo)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극심한 탄압과 신변 위협 속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후 아르헨티나에서는 〈망각과 침묵에 반대하는 정체성과 정의를 위한 아들딸들〉(Hijos e Hijas por la Identidad y la Justicia contra el Olvido y el Silencio)이라는 시민단체가 출범하면서 ‘더러운 전쟁’ 기간에 자행된 불법 입양 문제를 집중적으로 성토했고 있다(박구병 2006).

아동 실종에 격노한 사람들은 외국인과 자국 내 방외인들을 표적으로 삼았는데, 당시 사라진 아동 대부분 게릴라 소탕을 벌이던 군부에 의해 유괴된 뒤 국외로 입양되었다. 아동 실종 연루 세력이 규명되지 못한 결과 애꿎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었다.

과테말라인들의 극단적 대응은 집단학살과 인권 유린이 횡행하던 내전 기간의 대혼란과 원주민들의 상처를 방증한다. 과테말라에서는 1980년대 초중반 농촌지역에서 암약하며 정권반대 투쟁을 벌이던 소수의 게릴라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20,000여명의 무고한 원주민이 학살당했으며(Briggs 2012, 178) 440여개의 원주민 공동체가 파괴되었다(Coope et al. 2006, 526; Dubinsky 2010, 105). 1982년 환경 파괴 우려가 제기된 칩소이 댐 건설에 반대한 주민들을 소탕할 때, 군부에서는 초기에 성인 남성들만 살해하다가 중국에 여성들과 아동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살육했다(Rotabi et al. 2012c, 131). 내전 기간에 학살된 희생자 중 93%가량이 군부의 제노사이드 피해자로 추산된다(Briggs 2012, 178). 당대 과테말라 정권은 지역공동체 파괴 목적으로 유괴를 서슴지 않았으며, 실종 아동 사진을 산에 뿌린 뒤 은둔해 있던 농민이 행방불명된 자식과 상봉하기 위해 하산하면 학살하기도 했다(Dubinsky 2010, 106). 자식을 여인 부모가 삶의 근거를 상실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군부에서는 유괴와 불법 입양을 조직적으로 감행했다.

민심이 흉흉하던 과테말라에서는 1984년에 접어들며 외국인이 원주민 아동들을 불법으로 입양 보내는 중개인이라는 괴담이 급속도로 확산되며(Dubinsky 2010, 10) 일군의 외국인 관광객이나 활동가, 과학자가 집단 린치를 당하는 사태가 속출한다(Briggs 2012, 184).¹²⁾ 충격적 사태는 미국의 인권운동가 준 웨인스톡(June D. Weinstock)에게 발생했다(Castañeda 2002, 116). 당시 몇몇 서방 활동가들이 원주민들과 연대하여 해방운동을 벌이거나 현지 아동들을 보살피고 있었다(Briggs 2012, 186). 1994년 산 크리스토팔 베라파스에서 수백 명의 주민이 그녀를 유괴범으로 의심해서 수차례 칼로 찌르는 등의 무자비한 공격을 가해서 중상을 입혔다.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 원인으로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과테말라 아동 실종을 주도했다는 소문을 유포한 군부를 지목하고 있다(Briggs 2012, 190; Castañeda 2002, 118; Dubinsky 2010, 110-111).

브릭스는 당시 과테말라의 풍경을 “괴물 이야기들”(monster stories)이 만연한 “비문명적 전쟁”(uncivil war) 시기로 부른다(Briggs 2012, 184).

더빈스키는 당시 실종 아동으로 규정된 아동들이 국외로 입양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12) 1994년에 과테말라를 여행 중이던 미국 여성은 산파 루씨아 꼬스말과빠에서 경찰에 의해 유괴범으로 의심받은 뒤 투옥되었다. 경찰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경찰서에 난입해서 라슨(Melissa Larson)을 응징하려 했으나, 이미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분개해서 경찰서를 파괴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과테말라의 다른 마을에서는 스위스 화산학자를 비롯한 과학자들이 유괴범으로 의심을 받아서 공격을 받기도 했다(The New York Times 1994).

하며, 과테말라 정부를 비롯한 입양 관련자가 사태를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진실을 탐구했다고 지적한다(Dubinsky 2010, 108). 이 사건은 분노가 들끓던 와중에 타자를 희생양 삼아 내부 불안을 진정시킨 것이었지만, 이면에는 정부의 폭정과 오랜 내전으로 민생 불안이 극에 달한 과테말라인들의 외상이 있었다(Castañeda 2002, 120). 한때 희생자였던 이들이 가해자가 된 형국은 다른 입양송출국에서 재발되지 않았지만, 중남미 전역에서 입양 관련 괴담이 지속적으로 유포되었다(Fonseca 2002a, 35). 국외입양 관련 미확인 정보가 쉽사리 유통되는 환경은 입양아들의 삶을 우려하는 집단 심성을 표출한다.¹³⁾

실종아동 괴담을 이용한 통제 수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자 관계 당국은 국외 입양송출을 노골적으로 추진한다. 대중 통제 방안으로 활용되던 국외입양의 이점을 확인한 당국에서 국외입양 제도를 산업적 측면에서 활용하게 된 것이다. 후술할 절에서는 불법 입양으로 점철된 과테말라 국외입양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2. 과테말라의 입양 제도화의 역기능

중남미 국외입양은 사회·경제적 모순의 결과물로 나타나는데, 낙태가 제한된 현실에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처지의 여성들은 불법 입양 유혹에 취약해질 수 있다(Gailey 2010, 107). 자녀를 입양 중개인에게 양도하는 생모는 국외입양이 자식과의 친족관계(kinship)를 단절시킨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중대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입양 과정에서 친권 포기 각서가 위조되거나 뇌물 수수, 서류 조작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중남미와 동유럽의 일부 국가, 캄보디아 등지에서 불법 입양이 성행하고 있다(Gailey 2010, 99; Groza et al. 2009, 653).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입양 기관들과 유착된 일부 관료나 전문가가 국외입양을 이윤추구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점이다(Briggs 2012, 192). 중남미 내 엘리트 집단,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공증인과 같은 중간계층, 그리고 입양아의 친생부모와 같은 빈곤 계층이 망라된 각계각층이 불법 입양 커넥션에 연루돼 있다(Dubinsky 2010,

13) 1993년 브라질의 영향력 있는 언론 <폴라 지 상파울루>(Folha de S.Paulo)의 브라질 아동의 이탈리아 입양 보도가 물의를 일으켰다. 이 보도에서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프랑스 대표단이 아동 인신매매 문제를 거론한 발언을 출처로 삼았다. 이탈리아에 입양된 4,000여명의 브라질 아동 중 단지 1,000명만 생존해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나머지 3,000여명은 학대로 인해 사망했으며 피해자 중 장기말매 피해자도 있다는 것이었다. 1994년 BBC에서는 브라질 장애아들이 국외로 입양되는 주된 원인이 불법 장기 적출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해 볼네이 가라파(Volnei Garrafa)는 이탈리아인과의 공동 저작 『인간시장』(O mercado humano)에서 지적장애 아동이 입양되는 원인이 장기 적출이라고 명시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브라질의 한 판사는 1994년에 국외입양 모리토리엄을 선언하며 관련 조사에 임했지만 음모이론을 입증하는 증거가 확인된 바 없다(Fonseca 2002a, 36).

113; Fonseca 2006, 158; Smolin 2006, 125). 이러한 제반 사실로 인해 브릭스는 지명도 있는 친(親)입양 연구자 바르톨렛(Elizabeth Bartholet)이 언급한 ‘누구의 자식도 아닌 아동들’(Nobody’s children)이라는 법적 개념이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Briggs 2012, 17). 입양아가 ‘누군가의 자식’(somebody’s children)이라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는 브릭스의 말은 사회의 지지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었다면 상당수의 빈곤한 산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된다.

과테말라에서 불법 입양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태부족한 사회복지, 이촌향도로 인해 지역공동체와 단절된 이주여성들의 고충(Rotabi et al. 2012b, 113), 열악한 여성인권(Rotabi et al. 2012c, 134)과 아동인권, 저조한 출생 등록 비율(UNICEF 2007)과 가정에서 출산하는 문화(Payton 2015, 3), 고립된 지역 거주로 인한 외부와의 소통 장벽이 지적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은 불법 입양이나 영아유기 및 학대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Smolin 2006, 166). 서류상 존재하지 않은 아동의 운명은 아동을 매매 수단으로 간주하는 중개인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며, 급기야 고아로 둔갑돼서 미국 등지에 입양되기도 한다(Bhabha 2004, 182).

과테말라의 불법 입양 실태에 대한 전 방위 압력이 여러 입양수용국에서 빗발치자 과테말라 정부는 마침내 2003년에 헤이그 국가 간 입양조약에 가입한다. 이 조약에서는 원가족 양육을 우선 추진하되, 피치 못할 경우 국외입양보다 국내입양을 우선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Yngvesson 2010, 19). 입양의 전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는(Rotabi et al. 2012c, 130) 이 조약은 과테말라처럼 국외입양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소위 ‘아동 교환’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기 쉬운 국가에 절실히 요구되었지만, 조약 가입 이후에도 불법 입양이 근절되지 않았다. 미국이 2010년에 과테말라 아동 입양 일시중단이라는 강경책을 내놓았지만 과테말라의 굴곡진 입양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Rotabi et al. 2012b, 109; Rotabi et al. 2012c, 131).

3. 과테말라 아동의 현실과 미래

과테말라 아동이 전 세계 입양 논쟁에서 자주 거론되는 원인은 국외입양을 야기하는 문제가 산적한 것과 관련돼 있다. 과테말라 아동은 불법 입양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신체적 학대, 살해, 조혼 압력, 미취학, 출생신고 미등록으로 인한 복지 제한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유엔범죄기구(UNODC)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전 지구적 살인 연구』(Global Study on Homicide) 보고서에서 살인 범죄가 심각한 국가로 지목된 과테말라에서는 피해자 중 아동도 다수 포함돼 있다(UNODC 2013).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약물 남용과 일상적 폭력, 영양실조, 노숙 생활에 방치되는 소위 ‘거리의 아동들’(niños

de la calle)은 경범죄를 저지르거나 실외에서 생활하다가 자경단이나 경찰, 갱단에 의해 살해되기도 한다(Coope et al. 2006, 526; Correa 2013, 338). 1960년부터 1996년까지 지속된 내전 기간에 자행된 집단 학살의 주요 피해자 중 한 축이 부랑아동이었다(Lindblom 2004, 57).

과테말라 아동은 ‘돈으로 환산 불가능한’(priceless) 가치를 지니며 유년기를 보호받는 서구의 아동과 차별화된 삶에 방치돼 있다(Zelizer 1994). 아동 대상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테말라에서는 2001년에 최소 1,040여명의 아동이 살해당했으며, 2014년에도 최소 660명의 아동이 살해당했다(Butterly 2015; Lindblom 2004, 29). 여아를 14세 때부터 결혼시킬 수 있는 과테말라에서 일부 부모가 상대적으로 고령인 배우자와 딸을 결혼시키는 원인은 궁핍이다(Butterly 2015). 아동을 겨냥한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도 심각한 수위라고 지적된다(Speizer et al. 2008, 460). 아동 대상 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법의 공백으로 인해 아동은 심각한 사고를 겪고 있으나(Offit et al. 2010, 2), 무능하고 부패한 경찰에 대한 불신 및 처벌의 한계로 인해 범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Briggs 2010, 204; Correa 2013, 341; Offit et al. 2010, 3).

위의 문제는 국외입양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동 학대를 비롯한 아동 대상 중범죄가 만연한 과테말라에서는 소외아동이 국외로 입양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여길 수 있다(Groza et al. 2009, 653; Wilson et al. 2005, 746~747). 공공의료가 취약한 상태에서 질병을 앓는 아동에게 기본적 의식주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원가족은 불법 입양 유혹에 취약해진다. 의료비용 부담으로 집에서 출산하는 문화는 출생 신고 미등록 및 서류 위조를 부추긴다. 마지막으로 소외아동이 직면한 고난은 과테말라인들에게 아동인권 문제를 부각 시키는데, 거짓 합치 효과(false-consensus effect)처럼 자국에서 수난을 당하는 아동이 국외에서도 유사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된다. 타국에 비해 국외입양에 대한 불안이 증폭된 데는 과테말라의 열악한 아동인권이 자리한다.

현재 과테말라에서 국외입양 폐단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데, 2007년에 개정된 입양법에는 민간 입양 기관 난립으로 인한 폐단을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Rotabi et al. 2012a, 404). 정부는 입양 제도를 정비하며 불법 입양 중개인이 침투할 여지를 없애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Rotabi et al. 2012a, 404). 과테말라에 태부족한 아동 전문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 <대안돌봄 가이드라인과 가족보존> 강좌를 유니세프와의 공조로 개설해서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Rotabi et al. 2012a, 410).

하지만 루마니아와 캄보디아, 엘살바도르가 심각한 불법 입양 사건들로 홍역을 치렀던 것처럼, 대형 입양 스캔들이 속출했던 과테말라에서는 국외 입양송출이 외부적 요인으로 급감하고 있다. 미국 등 몇몇 입양수용국에서 과테말라 출신 아동 입양을 기피하자 국외 입양송출이 급감하게 된 것이다.

〈표 1〉 과테말라 아동의 미국 입양송출 기록¹⁴⁾

해당년도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미국 입양 송출수	13	29	23	7	32	50	754	4112	4726
해당년도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미국 입양 송출수	4135	3783	3264	2328	2419	1610	1516	1002	854

위의 도표는 과테말라 국외 입양송출 추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과테말라 아동의 미국 입양은 한때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2007년에는 무려 4,726명가량 입양됐다. 그러나 2009년부터 입양송출이 급감하더니 2010년부터는 비교적 소수의 아동만 미국에 입양되었다. 2016년에는 불과 2명만 미국에 입양되는 등 사실상 과테말라의 국외 입양송출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The Bureau of Consular Affairs 2017). 국외입양 통계 전문가 셀만(Peter Selman) 역시 과테말라의 국외 입양송출이 최근 현저히 감소하는 현상에 주시하고 있다(Selman 2015, 12).

과테말라 출신 연구자 마로긴(Ingrid Ailin Dávila Marroquín)은 과테말라의 국외입양이 미국에 압도적으로 의존하는 특징을 법무상(Procuraduría General de la Nación)이 발표한 통계 자료로 입증한다(Marroquín 2006, 71).¹⁵⁾ 과테말라 아동의 최대 입양수용국이었던 미국 입양이 사실상 중단되며 국외입양이 쇠하고 있으며, 국가입양협의회(Consejo Nacional de Adopciones)에서는 과테말라의 국외입양이 중단되었다고 공표하고 있다(CNA 2017).

이 점에서 보건대, 과테말라가 국외 입양송출을 재개하려면 인신매매나 입양 서류 위조, 원가족 농락과 같은 불법 요소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요컨대, 과테말라에서는 국외 입양송출이 아동인권 증진과 합법적 입양의 증명이 되는 기묘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IV. 과테말라의 국외입양 논란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과 과테말라는 국외입양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주요 입양송출국이다. 국외입양

14) 본 통계는 미국 국무부와 과테말라 법무상의 통계자료를 참고했다.

15) 과테말라에서 발표한 자료에 미국 국무부 및 셀만의 통계와 배치되는 결과가 자주 발견되는 점은 과테말라의 아동 입양송출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든다(Selman 2016, 3).

의 역사에서 불법 입양 혐의로 지탄을 받은 과테말라나 루마니아, 중국, 캄보디아, 러시아 등과 달리, 한국의 불법 입양 사례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국외입양 폐해 역시 간헐적으로 지적돼왔다(정소라 2016). 한국에서는 열악한 처지에 놓인 원가족이 스스로 양육하도록 지원하기보다 입양을 강권하는 입양 기관의 자세, 원가족에게 정확한 입양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 아동의 친생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입양 동의를 대신 받는 절차상의 허점, 아동의 정체성이 위장된 채 입양되는 사건이 지적되고 있다(박정준 2017; Liem 2000; Trenka 2009). 일부 입양인과 원가족은 굴곡진 한국의 국외입양의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억의 정치학을 이끌고 있다(Trenka 2012).

그렇다면 불법 입양 혐의가 밝혀져서 국외입양 중단을 공표하게 된 과테말라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첫째, 국외 입양송출이 일종의 아동복지 방안으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한국의 입양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 이후 절대빈곤 속 전쟁고아가 폭증하는 ‘예외상태’에서 일시적 대책으로 시행된 국외 입양송출이 제도화되어서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과 인구 고령화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된 지경에서도 한국은 매해 수백 명의 아동을 여러 입양수용국에 보내고 있다(박정준 2017; 보건복지부 2017). 한국의 인구 구조가 대부분의 입양수용국과 유사해진 상황에서 한국 아동들의 입양송출이 중단되지 않는 현실은 국외입양을 중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기보다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Kim 2010).

이 점에서 한국에서 국외 입양송출을 줄이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상당수가 미혼모의 자녀들인데, 양육 책임을 미혼모에게 전가하는 현실은 미혼모 가구에 대한 편견 및 지원 부족과 맞물리며 요보호아동을 양산하고 있다. 미혼모 가구가 받는 지원금을 국내 양부모들이 받는 수준만큼이라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데, 미혼모들이 사회적 지원 속에서 양육할 수 있을 때 국외 입양송출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¹⁶⁾

둘째, 한국에서 여러 민간 입양 기관이 성업 중인 상태가 국외입양을 중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입양 기관은 자체 인력 고용과 사업 규모 확장, 친입양 문화 홍보, 미혼모 관리, 사후입양 서비스 등 기관의 영속성을 꾀하고 있다. 민간 입양 기관이 국내외 입양을 총괄하는 구조는 한국 정부가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외 입양송출에서 제 역할을

16) 현재 한국의 국내입양 양부모들은 여러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예컨대, 입양 기관에 지급하는 입양비용 지원, 입양아 양육수당 지급(만14세 미만에 한해 월 15만 원 지급),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별도 지원(만18세 미만), 입양 양육 보조금, 의료비 지원 및 의료급여 1종으로 지정하여 의료비 지원, 입양아 심리치료비 지원 등이 나온다(박미정 2014, 24).

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정부는 입양 기관들과 기실 ‘상생’하며 이점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외화가 부족했던 시절 외국의 양부모가 지불하는 입양수수료는 한국 경제에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며, 요보호아동을 국외로 대규모로 입양 보내며 복지에 할애해야 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허나 최근 국외입양 제도의 폐단이 속속 밝혀지며 한국정부나 입양 기관의 태도가 비판을 받기도 한다. 입양 수수료 수령 등 수익성 확보에서 무관해지기 힘든 입양 기관의 특성상 국외입양이 산업으로 전락하는 사태가 여러 입양송출국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외입양 제도를 민간 입양 기관에게 일임한 결과 각종 문제가 불거진 과테말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한국에서는 좀 더 체계화된 입양 제도 시행이 요구된다. 과테말라에서는 입양 기관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법조인과 공증인, 사회복지사 등이 결탁한 불법 조직이 수십 년간 국외입양 제도를 악용했는데, 체계화된 불법 입양 조직의 활황 속에서 아동과 원가족의 권리가 침해됐다. 한국에서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을 시행한 조치는 불법 입양 근절뿐 아니라 입양인의 이익을 도외시했던 문제를 개선하는 목적을 담고 있으나(김재민 2016, 309), 여러 입양 기관과 언론은 지속적으로 이 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절차에 따라 입양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요보호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셋째, 국외 입양송출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과거 과테말라 군부 및 정부에서는 내전 기간 민중의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동 유괴와 불법 입양을 자행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국외 입양송출에 동원된 입양아의 고통을 기억하며 입양인의 ‘입양 노동’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Müller 2012). 2십만 여명에 육박하는 한국 입양인들이 경제발전 시기에 외화 공급 및 부모 되기를 갈망하는 서구인들의 가족 구성에 일조했으며, 국외입양으로 맺어진 한국과 입양수용국들과의 관계가 양국에 이로움을 준 측면이 있다. 국외입양 제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며 입양의 3주체가 소외되는 일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입양될 수 있는 아동 중 소수자 아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과테말라에서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 대부분이 원주민 아동들이거나 장애아이었다. 라디노 아동이 주로 국내에서 입양되는 것과 대조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한국에서는 장애아나 소위 “건강 이상” 아동들이 국외로 입양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보건복지부 2017). 애당초 입양의 목적이 아동의 성별이나 장애 여부, 연령, 인종, 유기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위기에 처한 아동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헤이그 국가 간 입양협약의 정신을 한국에서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V. 결론

본고에서는 국외입양의 역기능이 실제보다 과장되어서 회자된 사례가 되풀이된 과테말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과테말라에서는 군부정권이 유폐시킨 입양 관련 괴담 피해가 현실화된 전례가 있다. 실종된 아동의 행방을 몰라서 전전긍긍하던 과테말라인들에게 전파된 유언비어는 입양 관련 괴담의 현실적 공포를 보여주었다.

본고에서는 주요 입양송출국이 된 과테말라 국외입양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사회복지 부족과 낙태 제한, 빈곤, 전통적 지역공동체 와해가 국외입양의 표면적 원인을 제공했다(Rotabi et al. 2012a, 404). 여기에 저학력 빈곤계층인 원가족을 유혹하는 불법 입양 중개인은 과테말라가 불법 입양의 진원지라는 악명을 듣도록 만들었다(Banks 2004, 32). 내전 기간 일종의 전술로써 아동 유폐와 불법 입양이 활용됐던 과테말라에서 실종된 자녀의 행방에 애타하던 과테말라인들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전가함으로써 실제적 진실 규명에 접근하지 못했다. 내전 종전 후 과테말라에서 불법 입양이 문제가 된 데는 불법 입양 중개인뿐만 아니라 국외입양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내전 기간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원인도 작용한다. 최근 들어 국외입양과의 연장선상에서 과테말라 아동의 현실이 지적되고 있다. ‘거리의 아동’의 간난신고, 아동 대상 범죄 창궐, 조혼 강요, 미취학으로 인한 문맹과 아동 노동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외입양 종식 노력에 앞서서 아동인권 증진에 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불법 입양 혐의가 부각되는 외부 요인 때문에 과테말라에서 국외 입양송출을 중단하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과테말라는 요보호아동을 국외로 입양 보내기 위해 불법 입양 요소부터 근절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처한 것이다. 향후 과테말라에서 국외입양 제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요보호아동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요구된다. 심각한 수위의 불법 입양이 과테말라를 인구비율상 세계 최대 규모의 입양송출국으로 이끌었다는 점에 대한 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요보호아동 ‘구출’(rescue)을 기치로 전개된 국외입양 과정에서 정작 아동이 극심하게 소외되는 형국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테말라와 동일하게 주요 입양송출국이 된 한국에서는 불법 입양으로 점철된 과테말라의 사례를 교훈 삼아 국외입양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자세가 요구된다. 원가족 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 요보호아동 보호 문제를 입양으로 풀려는 관행 극복, 절차에 따른 엄격한 입양 절차, 입양 관련 법 강화, 아동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양육하려는 입양 문화의 변화가 요구된다. 상흔으로 점철된 한국의 국외입양 역사에 대한 집단 기억과 반성이 뒤따를 때 한국의 국외입양 제도도 본궤도를 찾을 것이다.



1. 국내 및 국외문헌

- 김재민. 2016.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에 투영된 인권의 공백. 기억과 전망 35, 282-318.
- 박구병. 2006. ‘추악한 전쟁’의 상흔: 실종자 문제와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의 투쟁. 라틴아메리카연구 19(2), 69-96.
- 박미정. 2014. 국내입양 현황과 개선방안.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192, 22-27.
- 박정준. 2017. 동아시아 3국의 국외입양 제도 전개 과정 연구. Asia Review 6(2), 89-118.
- 정소라. 2016. 한국 입양법 변화의 사회적 의미: 1967년 입양법과 2012년 입양법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65, 46-62.
- 트렌카, 제인 정. 2010. 백만 명의 살아있는 유령들: 구조적 폭력, 사회적 죽음 그리고 한국의 해외입양. 여/성이론 22, 33-51.
- Amnesty International USA. 2014. On the brink of death.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 _____. 2009. The Total Abortion Ban in Nicaragua,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 Banks, J. 2004. The U.S. market for Guatemalan children: suggestions for slowing the rapid growth of illegal practices plaguing international child adoptions,” Suffolk Transnational Law Review 28(1), 31-56.
- Barni, Daniela, E. León and R. Rosnati, J. Palacios. 2008. Behavioral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in International Adoptees: A Comparison Between Italian and Spanish Adoptive Parents’ Reports. Adoption Quarterly 11(4), 235-254.
- Bhabha, J. 2004. “Moving babies: globalization, markets and transnational adoption,” The Fletcher Forum of World Affairs 28(2), 181-197.
- Briggs, L. 2012. Somebody's Children: The Politics of Transnational and Transracial Adoption. Duke Univ Press.
- Castañeda, C. 2007. Figurations: Child, Bodies, Worlds. Duke University Press.
- Cederblad, M., B Höök, M. Irhammar, A. M. Mercke AM., 1999 Mental health in international adoptees as teenagers and young adults. An epidemiological

-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8), 1239-1248.
- Choy, C. 2013. *Global Families: A History of Asian International Adoption in America*. New York Univ Press.
 - CNA. 2016. *Memoria de Labores 2015(2015년 업무 기록)*. Consejo Nacional de Adopciones.
 - Coope, C., S. Theobald. 2006. Children at risk of neglect: Challenges faced by child protection practitioners in Guatemala City. *Child Abuse & Neglect* 30(5), 523-536.
 - Correa, P. 2013. Poverty a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the Case of Street Children in Guatemala and Brazil. *Revista de Direito Internacional* 10(2), 334-352.
 - Dalen, M. 2001. School Performances Among Internationally Adopted Children in Norway. *Adoption Quarterly* 5(2), 39- 58.
 - De Jesus, L. M. 2013. Abor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 comparative study of domestic laws and relevant jurisprudence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LSA Journal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20(1), 1-47.
 - Dorow, S. D. 2006. *Transnational Adoption: A Cultural Economy of Race, Gender, and Kinship*. New York University Press.
 - Dubinsky, K. 2010. *Babies without Borders: Adoption and Migration Across the America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Fonseca, C. 2002a. Inequality Near and Far: Adoption as Seen from the Brazilian Favelas. *Law & Society Review* 36(2), 101-134.
 - _____. 2002b. The Politics of Adoption: Child Rights in the Brazilian Setting. *Law & Policy* 24(3), 199-227.
 - _____. 2006. An unexpected development: The "demise" of international adoption in Brazil," *Dados* 49(1), 41-66.
 - Gailey, C. W. 2010. *Blue-Ribbon Babies and Labors of Love: Race, Class, and Gender in U.S. Adoption Practice*. University of Texas Press.
 - Garigan, M. 2007. Guatemala's Adoption Industry. *The SAIS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27(2), 179-181.

- Gibbons, J. L. 2015. Ethnic and adoption attitudes among Guatemalan University students. *SpringerPlus* 4(1), 1-8.
- Groza V., K. M. Bunkers. 2014. Adoption policy and evidence-based domestic adoption practice: a comparison of Romania, Ukraine, India, Guatemala, and Ethiopia.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5(2), 160-171.
- _____. 2009. International adoption and child protection in Guatemala. *International Social Work* 52(2), 649-660.
- Hoelgaard, S. 1998. Cultural Determinants of Adoption Policy: A Columbian Case Study. *Int J Law Policy Family* 12(2), 202-241.
- Howell, S. 2007. *The Kinning of Foreigners: Transnational Adoption in a Global Perspective*. Berghahn Books.
- Kim, E. J. 2010. *Adopted Territory: Transnational Korean Adoptees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Duke University Press.
- Kim, H. 2012. Television Mothers: Korean Birthmothers Lost and Found in the Search-and-Reunion. *Cultural Studies ↔ Critical Methodologies* 12(5), 438-449.
- Leifsen, E. 2008. Child Trafficking and Formalisation: The Case of International Adoption from Ecuador. *Children & Society* 22(3), 212-222.
- Leinaweaver, J. 2013. *Adoptive Migration: Raising Latinos in Spain*. Duke Univ Press.
- Lindblad, F. 2003. Intercountry adopted children as young adults: A Swedish cohort stud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3(2), 190-202.
- Lindblom, L. 2004. *Democracy and the evolution of a culture of prevention*. Uppsala University.
- Marroquín, I. A. D. 2006. Necesidad de una autoridad central en materia de adopción(중앙 입양 기구 필요성). Universidad de San Carlos de Guatemala.
- Odenstad, A., A. Hjern and F. Lindblad, F. Rasmussen, B. Vinnerljung, M. Dalen. 2008. Does age at adoption and geographic origin matter? A national cohort study of cognitive test performance in adult inter-country adoptees. *Psychological Medicine* 38(12), 1803-1814.
- Offit, T. A. 2010. *Confronting Violence in Postwar Guatemala: An Introduction*.

- The Journal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Anthropology 15(1), 1-15.
- Rotabi, Karen Smith, J. Pennell and J. L. Roby, K. M. Bunkers. 2012a. Family group conferencing as a culturally adaptable intervention: Reforming intercountry adoption in Guatemala. *International Social Work* 55(3), 402-416.
 - _____, J. L. Gibbons. 2012b. Does the 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 Adequately Protect Orphaned and Vulnerabl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1), 106-119.
 - _____, N. F. Bromfield. 2012c. The Decline in Intercountry Adoptions and New Practices of Global Surrogacy. *Affilia* 27(2), 129-141.
 - _____. 2014. Child adoption and war: 'Living disappeared' children and the social worker's post-conflict role in El Salvador and Argentina. *International Social Work* 57(2), 169-180.
 - Selman, P. 2009. The rise and fall of intercountry adoption in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Social Work* 52(5), 575-594.
 - _____. 2012. The Global Decline of Intercountry Adoption: What Lies Ahead?. *Social Policy and Society* 11(3), 381-397.
 - _____. 2016. Receiving States 2004-2014, States of Origin 2004-2014. Newcastle University, 1-4.
 - _____. 2015. Twenty years of the Hague Convention: a Statistical Review. Newcastle University, 1-36.
 - Shin, Sunyung, J. J. Trenka and J. C. Oparah. 2006. *Outsiders within: writing on transracial adoption*. South End Press.
 - Smolin, D. M. 2012. Of orphans and adoption, parents and the poor, exploitation and rescue: a scriptural critique of the evangelical Christian adoption and orphan care movement. *Regent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8(2), 267-324.
 - Speizer, Ilene, M. Goodwin and L. Whittle. M. Clyde. J. Rogers. 2008. Dimensions of child sexual abuse before age 15 in three Central American countries: Honduras, El Salvador, and Guatemala. *Child Abuse & Neglect* 32(4), 455-462.
 - Trenka, J. J. 2009. *Fugitive Visions: an Adoptee's Return To Korea*. Graywolf Press.

- _____. 2006. The Language of Blood. Graywolf Press.
- _____. 2011. Internationally Adopted Koreans and the Movement to Revise the Korean Adoption Law. 이화젠더법학 2(2), 135-169.
- UNODC. 2014. Global Study on Homicide 2013. UNODC.
- Verhulst, Frank, W. Tieman and J. van der Ende. 2005. Psychotric Disorders in Young Adult Intercountry Adoptees: An Epidemiological Stud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2(3), 592-598.
- Von Borczykowski, Annika, A. Hjern, and F. L. Vinnerljung. 2006. Suicidal behaviour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adult adoptees: a Swedish cohort study,” Soc Psychiatry Psychiatr Epidemiol 41(2), 95-102.
- Wilson, Samantha, J. Gibbons. 2005. Guatemalan perceptions of adoption. International Social Work 48(6), 742-752.
- Yngvesson, B. 2010. Belonging in an Adopted World: Race, Identity, and Transnational Adop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Zelizer, V. 1994. Pricing the priceless child: the changing social value of childre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 인터넷 자료

- 보건복지부. 2017. 「국내 입양아 수 및 입양 비율」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08
 (2017.07.20)
- Brosnan, G. 2011. Right to life Guatemala. Al Jazeera.
<http://www.aljazeera.com/programmes/birthrights/2011/04/201141275013687249.html> (2016.09.28)
- Butterly, A. 2015. We need to talk about Guatemala, Newsbeat.
<http://www.bbc.co.uk/newsbeat/article/33179768/we-need-to-talk-about-guatemala> (2016.08.23)
- HCCH. 2016. 33: Convention of 29 May 199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publications1/?dtid=32&ci>

d=69 (2016.05.11)

- Müller, A. R. 2012. Adoptee justice is about social justice. The Korea Times.
http://www.koreatimes.co.kr/www/news/opinion/2012/10/137_121822.html
(2016.09.02)
- Ruzik, A. 2008. Adoptions in the EU.
www.ec.europa.eu/social/BlobServlet?docId=3956&langId=en (2016.08.28)
- The Bureau of Consular Affairs, U.S. Department of State. 2016. Statistics.
<https://travel.state.gov/content/adoptionsabroad/en/about-us/statistics.html>
(2016.05.23)
- The New York Times. 1994. Foreigners Attacked in Guatemala. The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1994/04/05/world/foreigners-attacked-in-guatemala.html>(2016.07.29)
- The World Factbook 2017 (2017.08.24)

3. 영상자료

- Liem, D. B. 2010. First Person Plural.

● 투고일: 2017. 01. 26. ● 심사일: 2017. 01. 26. ● 게재확정일: 2017. 03. 15.

The Development of a Transnational Adoption in Guatemala

Park Jeongjun (Chungang University)

The transnational adoption in Guatemala is closely linked with its social phenomena. Poverty-stricken households, lack of social welfare, abortion restriction have resulted in large number of abandonment of children. Moreover, the decay of extended families in poor neighbourhoods in Guatemala often leads to adoption. Above mentioned phenomena are said to be explicit reasons why transnational adoptions are widespread in Guatemala. Illegal adoption is also prevalent in Guatemala. There are side effects of transnational adoption in Guatemala. Some foreigners in Guatemala in the 1980s were sometimes mistaken for “child kidnappers” by Guatemalans. This rumour has been bruited about for many years. However, in reality, “kidnapped children” had been placed into foreign families. Whereas, in Guatemala, Government vowed to put an end to illegal adoption in their country, but has failed as many times. Furthermore, many thousands of children have become adoptees owing to human trafficking and coercion after long civil war in Guatemala. In Guatemala, human rights abuses of children after numberless false rumours about their children’s wellbeing give rise to illegal adoptions and fear.

<Key words> Transnational adoption, Enforced disappearance, Illegal adoption, The truth about missing children, Child organ stealing rumour